의 안 번 호	제54호
의결 연월일	2022. 4. 21.

는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심 사 보 고 서 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**안일자**, 제**안자**: 2022년 4월 13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4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4월 21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-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세무과장)
 - 가. 제안이유
 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법」의 일부개정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.
 - 나. 주요내용
 - 주민세의 세세목명 명칭 변경(안 제3조)
 - 변경전 : 재산분, 변경후 : 사업소분
 - 감정평가법인 자격 명확화(안 제7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: 생략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